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3. 11.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 (안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구분 재정비
-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
-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징수에 기여한 자”

※ “특별한 공적”의 범위 근거법령에 의해 세분화 및 명시화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례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등으로 지급 대상 구분 재정비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세입증대 기여한 공무원(신설)

○ 포상금 지급기준 정비 (안 제3조)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5 (신설)
- ※ 징수 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산정에 자료제공 경우~ (삭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 2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지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안 제1항),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 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안 제2항),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안 제3항),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안제4항)등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4항의 제1호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안 제2조제5항은 조례안에 규정된 “특별한 공적”을 세분화하여 명시했으며, 안 제2조제6항은 세입징수에 공적이 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와 제4조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으로 포상금 지급 심의시 과다지급 문제 등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였고,
 - 안 제5조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 안 제9조에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로써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를 늘리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는 포상금 지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1 호
----------	---------

제출연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 (안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구분 재정비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징수에 기여한 자”
 - ※ “특별한 공적”의 범위 근거법령에 의해 세분화 및 명시화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례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등으로 지급대상 구분 재정비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세입증대 기여한 공무원(신설)

나. 포상금 지급기준 정비 (안 제3조)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 5 (신설)
- ※ 징수 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산정에 자료제공 경우~ (삭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 2 명시

다. 포상금 지급한도 신설 (안 제4조)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 범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10.10~10.30, 20일간)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없 음
-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

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자를 말한다

④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축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66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

다.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체납처분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전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 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징수(세원 발굴)액				청구액 (원)	거 래 은 행 계좌번호	비 고
소속(주소)	성 명	생년월일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신문용지 54g/m²
190mm×268mm

※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체 납 자			징 수 내 역				징수 확인 (팀장)	특별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신문용지 54g/m²
268mm×190mm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지급대상)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 목	구 분	발 굴 세 원	납세의무자			징 수 일 자	징 수 확 인 (팀장)	포상금지급		
	직 급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포상금액	지급일	사 유

신문용지 54g/㎡